

서울특별시 동작구의회에서 의결된 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.

2015년 8월 6일

서울특별시 동작구청장 ^{07/29} 이창우

서울특별시 동작구 조례 제 1221호

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0조제2항 중 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”를 “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지역 및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”로 한다.

제18조제5호 중 “그 밖에”를 “그 밖에 회의에 연속 3회 이상 불참하는 등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 동작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

□ 개정 이유

동작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인원을 확대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주민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, 회의 참석율이 저조한 위원에 대한 해촉규정을 마련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통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

□ 주요내용

- 가. 주민참여위원회 위원 수 확대 및 지역, 성별 고려(제10조)
- 나. 위원 해촉 기준 신설 (제18조)